



韓國政府刊行物の 發刊에 대한 統計的 考察

崔 貞 泰
서울大圖書館

1. 政府刊行物の 意義와 範圍

우리가 政府刊行物を 理解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 意義와 範圍에 대하여 明確한 概念과 뚜렷한 基準을 미리 設定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은 政府刊行物이라고 呼稱할 때 그 말이 解釋如何에 따라 넓은 意味와 좁은 意味의 政府機關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刊行物도 그 기준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가령, 政府를 狹義의 行政府단을 의미한다면 政府刊行物의 범위는 縮小될 것이고 廣義로 立法, 司法, 行政府를 包括한다면 그 범위는 보다 넓어질 것이며 나아가 좀 더 擴大하여 國定豫算으로 運營되는 國家機關全體 그리고 이와 關係를 가지고 있는 外部團體, 管轄機關, 附屬機關, 이를테면 國立大學校, 研究所등 포함시킨다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 질 것이다.

이런점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를 確定시킬만한 理論이나 根據가 없기 때문에 國家마다 機關마다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에는 “政府刊行物이란 政府 各 機關에서 刊行한 各種의 刊行物を 指稱한다”¹⁾라고 넓은 意味로 해석해서 政府機關에서 刊行한 것이면 무엇이든 모두 政府刊行物로 認定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用語에 대한 法的 制度는 없지만 美國에서는 이미 法律에 의하여 그 定義가 定해져 있다. 즉 “政府刊行物이란 政府의 經費에 의하거나 法律의 要求에 의하여 個個의 文書로서 發行되는 情報資料(information matter)이다”²⁾라고 규정하여 政府刊行物은 政府의 經費(government expense)와 法律의 要求로써 발행되는 개개의 刊行物を 通稱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政府機關의 범위를 밝히지 못하여 漠然한 感이 없지 않다.

또 美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에 의하면 “法律上 組織된 政府機關의 權限으로 費用을 부담해서 刊

行되는 報告書, 圖書, 雜誌, pamphlet, 地圖 등을 印刷 또는 作成한 것”³⁾이라는 定義를 내려 形態의인 面만 置重하였을 뿐 政府機關의 範圍와 그 限界에 대하여는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유네스코出版物國際交換便覽」에는 위의 것을 다소 補充하고 있는바 “國家政府機關의 命令 및 費用에 의하여 發行되는 國會의 文書, 報告書, 議事錄, 기타 立法上的 刊行物 및 報告書, 國家書誌目錄, 行政要覽, 法律集 및 法院의 判例集, 其他 合議된 刊行物이다”⁴⁾라고 하여 廣義의 政府 즉 立法, 司法, 行政府의 諸資料를 網羅시키고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를 보면 「政府刊行物普及協議會」에서 編하는 「政府刊行物月報」가 每月 刊行되고 있는데 同月報 每 標題紙 裏面마다 “政府刊行物 普及強化에 대하여”라는 標題의 글을 실고 있다. 거기에 보면 “政府刊行物은 政府機關이 編輯하는 印刷物로서 販賣 또는 頒布하는 것”(1956年 閣議承認)이라고 그 定義를 밝히고 있으나 이것 역시 政府機關의 범위가 막연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政府刊行物調整審議委員會가 設置되어 “同委員會에서 審議對象으로 하는 各種刊行物을 政府刊行物이라고”(政府刊行物販賣普及規程[總理事令 第47號(1965. 6. 24) 第1條])規定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審議對象 與否問題로 심의 대상에 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 政府刊行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끔 曖昧模糊하게 되어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우리나라를 爲始하여 日

1)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集 1966 p. 105.
2) United State Code, Title 44-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 1901. Defini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
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3, p. 159.
4) Unesco,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Paris, Unesco, 1956 p. 30.

本 및 歐美에서 제 나름대로 概念을 설명하고 있으나 政府機關의 範圍와 限界에 대하여는 結論같이 明確하며 명확하지 못하다. 即 法律上 組織된 政府機關이 國家經費로 刊行하는 刊行物이라 하였으니 事實上 具體的으로 어디까지가 정부기관이고 어느 범위까지가 政府刊行物이라고 할 것인지 실로 모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基準如何에 따라 對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劃一的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政府刊行物的 意義와 範圍를 重視하고 다음과 같이 結論지어 鼎立하고자 한다. 즉 “政府刊行物이란 法律上 組織된 政府機關이 政府의 經費에 의하여 刊行하는 各種 資料를 말한다”라고 그 定義를 일단 밝혀두고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立法府, 司法府, 行政府의 「政府機構圖表」에 나타나 있는 各部(2室, 3院, 14部, 4處, 14廳) 및 各 所屬委員會와 地方自治團體에서 刊行하는 資料를 政府刊行物的 範圍로 보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한다.⁵⁾

2. 韓國政府刊行物的 發刊實態

政府刊行物的 發行實情은 世界各國이 그 獨自的인 慣行制度에 따라서 제 나름의 特色이 있는 것이다. 가장 合理的이고 組織化된 나라는 美國, 英國, 캐나다의 三國이 代表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行政機關의 하나인 特定機關에서 一元的으로 管理하며 印刷刊行配布가 一元化되고 있는 것이다.⁶⁾

또한 印刷, 刊行體制에 있어 政府刊行物은 一般刊行物과 根本的으로 다르다. 그 다른 體制를 分類하면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다.⁷⁾

첫째, 政府刊行物的 印刷, 刊行이 전문적인 정부기관에 의하여 一元的으로 行하여지고 組織되어 있는 體制.

둘째, 印刷과 刊行機關이 政府機關에 나누어져 있어 印刷, 刊行을 分擔하여 行하는 體制.

셋째, 統一的인 印刷을 行하는 機關이 있으나 刊行은 各部處가 個別的으로 하고, 反對로 刊行은 統一的으로 行하나 印刷은 個別的으로 各各하는 體制.

네째, 印刷, 刊行機關의 統一的인 機關이 없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政府의 各機關이 獨自的으로 印刷刊行을 行하는 非組織的인 形態를 가진 體制이다.

첫째형에 屬하는 나라는 美國, 英國, 캐나다, 이태리, 네델란드 등으로써 이는 美國과 英國이 그 代表的인 이어서 英美型 이라 말한다.

둘째형은 인도, 파키스탄 등이고 셋째형에 속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代表이다.

넷째형은 프랑스, 西獨, 벨기에, 스웨인, 스웨덴, 日本, 韓國등이며 흔히 大陸型이라 말한다.

이형은 政府機關에 印刷 또는 刊行機關은 있어도 그 기능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中央에 集中하는 조직과는 반대로 分散하여 印刷, 刊行이 行하여지고 있다는 特色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4가지 形態 가운데 制度的으로 各己 一長一短이 있으나 印刷, 刊行, 配布가 一元的으로 調節되어 있으며 目錄作成 및 配布가 合理的으로 조직되어 있는 英美型이 가장 理想的으로 보여진다. 大陸型에 屬하는 우리나라 政府刊行物的 印刷刊行的 型은 이를 管理하는 特定機關이 없고 刊行方針이 獨自的인 이어서 統一的으로 發行되지 않고 各기관이 저마다 다른 印刷所에 依賴하여 印刷하고 있어 隘路와 不便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政府에서는 1965年 大統領令으로 文化公報部에 「政府刊行物調整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 (大統領令 第2060號(1965. 2. 25)) 政府 各 機關에서 發行하는 刊行物을 調整하고 審議하는 機構를 만들었다. 이의 意義를 살펴보면, 政府 各 部處에서 發行되는 刊行物들이 아무런 統一된 調整이 없이 類似印刷物的 發行 내지 重複되는 亂脈狀을 止揚함으로써 政府豫算을 節約하는데 그 目的이 있고, 또한 政府刊行物的 內容이 一般, 團體 또는 學者調查研究者에게도 절대 필요한 貴重한 資料가 있었으나 對民普及方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圖書館, 一般學者間에 絶실히 要請되어 온 바 이의 解決策을 세우기 위함이다.⁸⁾

이와같이 目的意識과 큰 意義를 지닌 同委員會가 실은 政府全體를 統制하지 못하고 미약한 機能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딱한 일이다. 한 예로 1976年 政府刊行物的 發行 種數가 1, 236種⁹⁾인데 같은해 同委員會에서 審議한 것이 단지 446種¹⁰⁾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이 기구가 얼마나 미미한 存在인가를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同委員會로부터 全體의 政府刊行物 目錄을 期待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

지금까지 「政府刊行物目錄」은 各 部處 및 關係기관에서 綜合的 또는 部分的으로 수차례 나왔지만¹¹⁾ 全體

5) 崔貞泰, 韓國政府刊行物에 對한 研究, 延世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2, p. 5~8.

6) 國會圖書館, 政府刊行物目錄, 1948~65, 國會圖書館(1966), 머릿말

7) 黑木 努, 政府刊行物概說,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1972, p. 69.

8) 崔貞泰, op. cit., p. 23.

9) 國會圖書館, 정부간행물목록(제10집) 1976. pp. 1~43에서 集計

10) 政府刊行物調整審議委員會, 정부간행물일람표, pp. 1977.

11) ① 公報部, 政府刊行物目錄 1961

② 國會圖書館, 정부간행물목록 1966--

<表 1> 年度別政府刊行物發刊種數現況(1945~1976)

年度別	刊別	定 期	不 定 期	計
1945		3	—	3
1946		—	—	—
1947		1	—	1
1948		5	11	16
1949		—	8	8
1950		—	6	6
1951		1	2	3
1952		7	2	9
1953		3	14	17
1954		3	4	7
1955		2	5	7
1956		4	7	11
1957		4	21	25
1958		11	59	70
1959		22	65	87
1960		30	55	85
1961		83	88	171
1962		81	186	267
1963		2	44	46
1964		203	215	418
1965		96	197	293
1966		427	476	903
1967		416	379	795
1968		653	593	1,246
1969		679	536	1,215
1970		795	560	1,355
1971		685	567	1,252
1972		612	649	1,261
1973		642	626	1,268
1974		683	490	1,173
1975		552	654	1,206
1976		604	632	1,236
計		7,309	7,151	14,460

資料：國會圖書館，政府刊行物目錄，1948~65，1966~67，1968~69，1970~76에서 집계

※ 本 統計에서는 大學刊行物은 除外되었음.

刊行物을 파악하는데 아직도 未洽하다. 그 중에서도 發刊頻度로 보나 規模로 보아 「國會圖書館」에서 調査한 것이 가장 豊富하고 信憑性이 있다.

그러므로 이 資料에 依해 1945년부터 1976년까지 政府刊行物의 綜合한 發行種數를 보면 <表 1>과 같다.

그중 定期刊行物이 7,316種이며 不定期刊行物이 7,154種이어서 半半의 比率을 이루어 解放後 32年間 都合 14,470種을 刊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期間동안 政府刊行物 以外的 一般民間刊行物의 總種數는 根據資料가 없어서 헤아릴 筈 없으나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개년간 全國圖書發行量과 政府刊行物의 發刊現況이 나와 있다.<表 2>에 의하면 政府刊行物이 一般刊行物 發行種數에 比하면 1966년에는 30%, 1967년에 36%, 1968년에 49%, 1970년에는 52%로서

<表 2> 10個年間 全國圖書發行量 對 政府刊行物發刊現況

年度	區分	a. 出版年鑑에 의한 一般圖書種數	b. 國會圖書館에 의한 政府刊行物種數	b/a比率 %
	1966		3,014	903
1967		2,216	795	35.9
1968		2,528	1,246	49.3
1969		2,312	1,215	52.6
1970		2,591	1,355	52.3
1971		2,917	1,252	42.9
1972		4,469	1,264	28.3
1973		7,123	1,268	17.8
1974		7,018	1,180	16.8
1975		9,225	1,206	13.1
合 計		43,413	11,684	26.9

資料：1. 大韓出版文化協會，「出版年鑑」1976. p. 389.

2. 國會圖書館，「政府刊行物目錄」1966~1975에서 集計

점점 정부간행물의 比率이 높아나고 있다. 이것은 政府刊行物의 發行增加量이 特別히 많아졌다기 보다 一般刊行物의 數가 별로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1970년대에 와서 政府刊行物의 수는 踏步狀態에 있는데 反해 一般刊行物의 수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 비율이 크게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70年代부터 國力이 伸長됨에 따라 文化面에서도 經濟界와 함께 많은 發展을 보이고 있다는 徵表이며 反面에 政府機關에서는 別活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示唆하여 주고 있다.

이의 한 모델로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1년간 政府의 各 機關別 發刊現況을 보면 <表 3>과 같다. 本表의 作成參考資料는 前述한 바와 같이 가장 信憑性이 있다고 생각되는 大韓民國國會圖書館發行「정부간행물 목록」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9卷을 對象으로 하여 各 機關別 發刊狀況을 일일이 調査하여 作成한 것이다.

이와같이 龐大한 資料를 調査한 筆者의 意圖는 어떤 特定機關의 發刊實績을 公開하자는 것이 決코 아니다. 10여년 동안 얼마만큼의 政府機關이 어느정도의 量을 發刊하였는지를 살피고, 또한 해당기관이 더 많은 數量을 發行하고도 納本機關인 國會圖書館에 未納本 또는 未通報로 漏落시킨 資料가 얼마나 되는지를 自省시키는 契機를 주며, 한편 單一機關에서 얼마나 持續性 있게 規則的으로 體系를 세워 刊行하여 왔는지를 뒤돌아보고 反省의 記錄으로 남기자는데 있다.

③ 政府刊行物調整審議委員會，政府刊行物發刊一覽表 1968—

④ 國立中央圖書館，大韓民國出版總目錄 1963—

⑤ 其他 各 機關別로 部分的目錄 및 索引이 多數이다.

<表 3>

機關別・年度別 政府刊行物發刊現況

機關別	年度別	19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計
立 法 府		41	53	58	58	84	72	89	77	107	84	41	764
1	국 회 사 무 처	4	16	14	17	37	33	36	38	34	29	22	280
2	국 회 도 서 관	37	37	44	41	47	39	53	38	72	52	18	478
3	통 일 주 체 국 민 회 의	—	—	—	—	—	—	—	1	1	3	1	6
司 法 府		5	3	5	4	5	6	5	11	9	10	7	70
1	대 법 원	5	3	5	4	5	6	5	11	9	10	7	70
行 政 府		462	376	536	563	577	586	664	715	641	732	804	6,656
1	대 통 령 비 서 실	3	—	5	2	1	1	—	7	3	2	6	30
2	중 앙 정 보 부	—	—	1	1	2	—	—	—	—	—	—	4
3	국 가 안 전 보 장 회 의	—	—	1	1	—	—	1	1	1	—	1	6
4	경 제 과 학 심 의 회 의	—	1	2	—	5	1	—	—	—	—	—	9
5	감 사 원	2	2	3	3	2	1	—	6	6	6	2	33
6	기 회 조 정 실	7	6	11	6	9	6	2	3	5	6	5	66
7	행 정 계 획 위 원 회	22	3	—	—	—	—	—	1	2	6	—	34
8	장 기 자 원 대 책 위 원 회	—	—	—	—	—	—	—	—	1	7	2	10
9	경 제 기 회 위 원 회	22	19	24	27	28	24	27	18	25	12	7	233
10	기 회 위 조 사 통 계 국	—	—	—	—	—	—	—	21	9	13	24	67
10	총 무 처	6	8	8	8	8	6	2	1	1	2	3	53
	중 앙 공 무 원 교 육 원	8	13	5	7	1	1	—	—	2	—	—	37
	소 청 심 사 위 원 회	—	—	—	—	—	—	—	—	—	1	1	2
	정 부 기 록 보 존 소	—	—	—	—	—	—	—	—	1	1	—	2
11	과 학 기 술 처	—	8	25	74	6	98	40	95	9	8	77	440
	원 자 력 청	—	2	12	5	5	2	1	—	—	—	—	27
	원 자 력 연 구 소	13	4	9	8	2	1	—	—	—	—	—	37
	중 앙 관 상 대 문	3	3	4	3	3	5	5	3	3	4	2	38
	국 립 지 질 조 사 소	3	3	17	9	18	6	5	—	—	—	—	61
	중 앙 전 자 계 산 소	—	—	—	—	—	2	—	1	1	1	—	5
	방 사 성 능 학 연 구 소	—	—	—	—	—	—	1	—	—	—	—	1
	과 학 관 려 관	—	—	—	—	—	—	—	—	—	—	3	3
12	국 토 통 일 원	—	—	—	8	9	11	95	13	5	1	5	147
13	법 제 처	6	7	6	12	6	4	3	6	5	10	8	73
14	원 호 처	2	3	1	2	2	1	1	2	1	4	1	20
15	의 무 부	23	15	23	27	18	18	8	11	5	4	45	197
	의 무 부 의 교 연 구 원	—	—	—	—	—	—	—	7	16	19	—	42
16	내 무 부	8	5	10	17	8	7	30	8	14	7	12	126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소	1	1	1	1	1	2	2	1	—	—	—	10
	국 립 경 찰 병 원	1	—	1	1	2	—	—	—	—	—	—	5
	지 방 행 정 연 수 원	—	—	—	—	—	—	—	—	14	1	—	15
	산 립 자 원 조 사 연 구 소	—	—	—	—	—	—	—	2	1	—	3	6
	산 립 청	—	—	—	—	—	—	—	4	6	3	2	15
	임 업 시 험 장	—	—	—	—	—	—	—	7	3	1	4	15
17	재 무 부	7	3	13	8	6	6	5	10	8	6	7	79
	관 세 청	—	—	—	—	7	3	3	2	2	2	2	21
	국 세 청	5	4	4	2	3	2	—	3	1	3	2	29
	전 매 청	3	1	1	1	2	2	1	1	1	3	2	18
	조 달 청	5	3	1	4	1	2	6	3	10	6	10	51
	중 앙 전 매 기 술 연 구 소	1	2	2	1	1	2	—	—	—	—	—	9
	연 초 생 산 조 합 연 합	—	—	—	—	—	—	1	1	—	—	—	2
	세 무 공 무 원 교 육 원	—	—	—	—	—	—	—	—	—	—	69	69
18	법 무 부	6	5	13	10	10	9	5	3	4	3	3	71
	대 검 찰 청	1	—	4	3	5	4	3	3	3	4	3	33

機關別		年度別												計
		19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19	서 울 소 년 월	1	—	—	—	—	—	—	—	—	—	—	1	
	국 방 부	5	11	14	11	14	13	13	9	5	17	15	127	
	국 방 대 학 원	2	4	4	2	3	2	—	5	4	4	4	34	
	육 군 본 부	1	—	10	14	7	3	—	3	5	20	20	83	
	육 군 대 학 교	1	—	1	1	1	1	1	2	1	4	2	15	
	3 사 관 학 교	—	—	—	—	—	—	—	1	—	1	2	4	
	해 군 본 부	13	7	2	1	6	5	5	1	2	1	5	48	
	해 군 대 학 교	—	1	2	2	2	2	2	2	2	2	2	19	
	해 군 사 관 학 교	2	4	3	2	2	2	1	2	—	—	4	22	
	해 병 대 사 령 부	2	1	—	2	8	7	—	—	—	—	—	20	
	공 군 본 부	5	2	2	1	7	5	8	3	2	3	2	40	
	공 군 대 학 교	3	2	2	2	2	2	—	2	3	3	2	23	
	공 군 사 관 학 교	3	2	1	1	—	2	2	—	—	1	1	9	
20	공 군 항 공 의 료	—	—	1	1	1	—	—	—	—	—	—	7	
	제 2 군 사 령 부	1	—	—	—	—	—	—	—	—	—	—	14	
	제 2 군 사 령 부	1	—	—	—	—	—	—	—	—	—	—	1	
	합 동 참 모 본 부	8	1	—	—	—	—	—	—	—	—	—	9	
	병 무 청	—	—	—	—	—	1	2	—	—	—	—	3	
	문 교 부	6	8	8	19	40	13	4	8	8	8	9	131	
	국 립 중 앙 도 서 관	3	3	4	7	14	11	9	13	7	8	7	86	
	국 사 편 찬 위 원 회	3	4	5	6	7	5	5	7	7	9	9	67	
	예 술 원	3	3	3	3	4	6	4	4	4	5	4	43	
	학 술 원	2	3	5	4	4	4	4	4	6	5	6	47	
	중 앙 시 청 각 교 육 원	4	3	2	4	7	4	3	5	1	—	—	33	
	중 앙 교 육 연 구 원	—	—	—	—	—	—	—	—	1	4	5	10	
	중 앙 교 육 행 정 연 수 원	—	—	—	—	—	1	—	—	—	—	—	1	
국 립 과 학 관	—	1	—	—	—	—	—	—	—	—	—	1		
21	시도교육위원회및연구원	—	—	—	—	—	—	79	147	140	156	123	645	
21	농 수 산 부	16	15	16	20	19	14	13	2	14	8	11	148	
	농 촌 진 흥 청	10	8	13	14	21	29	13	19	23	37	26	213	
	국 립 농 산 물 검 사 소	3	1	5	5	2	1	—	—	—	—	—	17	
	국 립 생 사 검 사 소	1	1	1	2	6	2	—	—	—	—	—	13	
	국 립 동 물 검 역 소	1	1	1	—	2	1	—	—	—	1	1	8	
	수 산 청	4	23	12	13	6	6	2	1	2	3	6	78	
	국 립 수 산 진 흥 원	4	6	12	17	15	10	10	17	15	20	12	138	
	중 앙 수 산 검 사 소	3	4	2	2	2	2	—	1	—	—	—	16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9	4	2	7	4	—	—	—	—	—	—	26	
	수 산 기 술 훈 련 소	—	—	—	—	—	1	—	—	—	—	—	1	
	산 립 청	—	1	18	13	21	15	6	—	—	—	—	74	
	국 립 농 업 자 제 검 사 소	—	—	2	3	—	3	—	—	—	—	—	8	
	농 공 이 용 연 구 소	—	—	1	—	—	1	1	—	—	—	—	3	
농 업 경 제 연 구 소	—	—	—	—	—	12	—	15	7	4	6	44		
22	일 업 시 령 장	—	—	—	—	—	—	13	—	—	—	—	13	
	농 수 산 공 무 원 교 육 원	—	—	—	—	—	—	—	—	13	14	27		
	상 공 부	7	5	5	5	12	6	3	7	7	3	3	63	
	특 허 국	—	4	7	5	6	5	5	5	5	5	4	51	
	표 준 국	—	—	—	—	2	2	—	—	—	—	—	4	
	국 립 공 업 연 구 소	4	5	5	7	4	3	2	—	—	—	—	30	
	국 립 광 업 연 구 소	—	—	3	10	8	8	6	32	29	34	—	130	
	공 업 진 흥 청 소	—	—	—	—	—	—	—	2	2	1	4	9	
	공 표 준 시 령 소	—	—	—	—	—	—	—	1	1	1	—	3	
	23	진 설 실 부	21	7	23	11	9	12	3	9	9	7	15	126
		국 립 진 설 연 구 소	8	—	5	4	15	16	36	14	21	26	38	183
	24	보 건 사 회 부	8	6	7	8	15	14	8	5	10	5	16	102

機關別	年度別											計
	19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노동청	6	39	13	13	3	3	15	10	8	4	12	126
국립보건연구원	1	—	—	1	2	2	1	1	1	1	1	1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2	—	—	—	—	—	—	—	—	—	—	2
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1	—	1	—	—	—	—	—	—	—	—	2
가족계획연구원	—	—	—	—	—	1	17	—	—	—	—	18
사회복지연구원	—	—	—	—	—	—	—	—	—	—	11	11
국립의료원	1	1	—	—	—	—	1	1	1	1	1	7
25 교통신부	6	11	5	5	2	2	5	2	2	2	2	44
철도청	10	3	3	3	7	3	8	2	4	4	4	51
중앙해난심판위원회	—	1	—	1	3	1	1	—	1	—	—	7
수로국	—	—	4	8	12	9	5	7	7	9	9	70
철도기술연구소	—	—	1	1	3	2	1	1	1	1	1	12
교통공무원교육원	—	—	—	—	—	—	—	—	—	—	1	1
항만관리청	—	—	—	—	—	—	—	—	—	1	2	3
26 체신부	4	3	5	7	11	9	4	2	1	2	2	50
체신공무원교육원	—	—	1	1	1	—	—	—	—	63	—	66
전기통신연구소	1	1	2	2	2	1	2	3	1	1	1	17
전파연구소	—	—	2	2	3	2	—	1	2	1	1	14
체신청	1	1	—	—	—	—	—	—	—	—	—	2
27 문화공보부	90	22	75	13	27	19	16	20	23	13	11	329
문화재관리국	2	8	2	10	14	11	6	7	14	15	8	97
국립박물관	—	—	1	—	6	4	4	2	2	2	4	25
내외문제연구소	8	3	—	3	3	2	—	23	22	27	2	25
해외공보관	—	—	—	—	—	—	23	22	27	11	23	106
국악원	—	—	—	—	—	1	3	—	—	2	2	8
홍보조사연구소	—	—	—	—	—	23	32	24	28	26	6	139
문화재연구소	—	—	—	—	—	—	—	—	—	—	3	3
방송국	—	—	—	—	—	2	—	—	—	—	—	2
국립영화제작소	—	—	—	—	—	—	—	—	—	—	2	2
반공연맹	—	—	—	—	—	—	—	5	—	—	—	5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9	3	11	7	9	7	11	5	6	5	75
特別市道市郡	273	246	491	429	471	403	350	320	265	189	203	3,640
1 서울특별시	20	16	16	23	26	15	6	2	2	12	33	171
2 부산직할시	18	22	16	31	42	25	12	9	8	2	13	198
3 경기기도	15	36	209	27	55	56	41	37	37	27	33	573
4 강원도	13	22	28	37	47	37	63	83	42	23	18	413
5 충청북도	33	42	28	90	47	46	33	27	20	22	21	409
6 충청남도	12	5	25	36	53	42	31	16	28	18	16	282
7 전라북도	24	15	15	21	23	29	23	12	29	19	11	221
8 전라남도	53	12	35	49	38	21	35	25	28	14	9	319
9 경상북도	9	12	37	41	57	62	59	51	30	24	20	402
10 경상남도	64	55	62	55	63	60	30	35	33	22	19	498
11 제주도	12	9	19	19	19	10	16	22	7	5	10	148
12 이북5도	—	—	1	—	1	—	1	1	1	1	—	6
國營企業體	46	40	59	74	67	56	43	40	44	115	105	689
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	—	—	1	1	—	—	—	—	—	2
2 농어촌개발공사	—	—	—	—	3	3	1	1	1	1	—	10
3 농업진흥공사	—	—	—	—	3	2	3	5	2	4	3	22
4 대한광업진흥공사	—	—	4	1	2	3	3	3	2	1	2	21
5 대한무역진흥공사	25	17	30	46	26	15	11	5	2	74	59	310
6 대한산림조합연합회	1	1	1	1	2	1	1	1	1	1	—	11
7 대한석유공사	1	1	1	1	4	2	2	—	—	—	—	12
8 대한석탄공사	1	1	2	2	3	1	—	1	1	1	1	14
9 대한수산개발공사	—	—	1	1	1	1	—	—	—	—	—	4

機關別	年度別											計
	19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10 대한재보험공사	2	—	4	3	2	2	4	1	2	3	3	26
11 대한주택공사	2	1	2	1	3	1	1	1	5	1	2	20
12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	1	1	1	1	1	—	—	—	—	—	5
13 대한농운주식회사	1	1	1	1	1	—	—	—	—	—	—	5
14 대한해운공사	1	1	1	1	1	1	2	—	—	—	—	8
15 중주비료주식회사	1	1	2	1	1	1	1	—	—	—	—	8
16 한국수자원개발공사	—	—	—	1	1	—	—	—	—	—	—	2
17 한국전력주식회사	5	4	3	4	3	2	1	2	5	3	4	36
18 한국조폐공사	—	—	—	—	1	—	—	—	—	—	1	2
19 한국증권거래소	—	—	2	2	3	2	2	2	3	4	2	22
20 한국투자개발공사	—	—	—	2	5	7	8	3	4	7	1	37
21 토지개발조합연합회	3	5	3	4	—	—	—	—	—	—	—	15
22 국제관광공사	1	2	1	—	—	1	2	7	9	7	10	40
23 한국지하수개발공사	—	—	—	1	—	—	—	—	—	—	—	1
24 대한항공공사	1	1	—	—	—	—	—	—	—	—	—	2
25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1	1	—	—	—	—	—	—	—	—	—	2
26 호남비료주식회사	—	2	—	—	—	—	—	—	—	—	—	2
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	5	—	5	—	—	—	10
28 연연초생산조합연합회	—	—	—	—	—	1	—	—	—	—	—	1
29 한국도로공사	—	—	—	—	—	—	—	1	4	2	5	12
30 대한건설공사	—	—	—	—	—	1	1	—	—	—	2	4
31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	—	—	—	—	2	—	1	1	1	1	6
32 한국중합화학공업주식회사	—	—	—	—	—	—	—	1	1	1	1	4
33 한국마사회	—	—	—	—	—	—	—	—	1	2	—	3
34 한국방송공사	—	—	—	—	—	—	—	—	—	2	4	6
35 한국해의개발공사	—	—	—	—	—	—	—	—	—	—	2	2
36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	—	—	—	—	—	—	—	—	2	2
金 融 機 關	76	77	97	87	151	129	110	105	107	76	76	1,091
1 국민은행	1	1	5	5	5	2	3	3	3	2	2	32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1	13	18	21	34	36	23	35	33	9	10	253
3 서울은행	2	1	1	2	2	1	1	3	2	1	3	19
4 제일은행	3	5	3	2	3	3	3	1	2	1	3	29
5 조흥은행	2	2	2	2	3	4	3	1	1	1	3	24
6 중소기업은행	12	11	17	8	14	5	—	8	6	7	6	94
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2	1	—	—	—	—	—	3
8 한국산업은행	13	14	8	12	22	12	12	18	19	16	14	160
9 상업은행	1	2	1	1	2	2	—	2	3	2	2	18
10 한국신탁은행	—	—	—	2	4	2	10	6	3	2	—	29
11 한국외환은행	—	10	12	7	24	30	38	5	7	5	7	145
12 한국은행	18	17	25	20	31	26	11	18	18	18	14	216
13 한국주택은행	—	—	1	1	1	2	4	3	4	5	3	24
14 한일은행	3	1	4	4	4	2	—	1	1	2	2	24
15 금융융단	—	—	—	—	—	1	—	1	1	1	—	4
16 수협중앙회	—	—	—	—	—	—	2	—	4	4	3	13
17 수출입은행	—	—	—	—	—	—	—	—	—	—	1	1
18 대구은행	—	—	—	—	—	—	—	—	—	—	2	2
19 서울시농협	—	—	—	—	—	—	—	—	—	—	1	1
合 計	903	795	1,246	1,215	1,355	1,252	1,261	1,268	1,173	1,206	1,286	12,910
定期刊行物	427	416	653	679	795	685	612	642	683	552	604	6,748
不定期刊行物	476	379	593	536	560	567	649	626	490	654	632	6,162
發行所數	108	108	121	123	129	138	110	122	123	127	131	1,340
1個所當平均發刊數	8.4	7.4	10.3	9.9	10.5	9.1	11.5	10.4	9.5	9.5	9.4	9.6

3. 發刊當局者에 대한 建議

政府刊行物の 發行目的이 根本에 있어서는 國家의 政治와 行政體制를 效果的으로 알리는데 있다면 발행된 그 出版物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一般國民에게 널리 알려져 그것을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政府의 한 特定機關에서 一元화된 制度下에 印刷에서 부터 刊行, 配布가 同一機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同時에 政府刊行物を 利用하는데 있어서 萬人이 利用할 수 있도록 法制化하여서 網羅의이며 새로운 目錄들이 隨時로 發刊되고 幅넓은 普及을 위해 全國에 많은 수의 보급기구를 설치하여 普及販賣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反面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政府刊行物の 印刷과 刊行이 單一機關에서 集中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分散된 機關에서 各各 發行하고 있으며 그것도 定期刊行物の 경우에는 無計劃性에서 오는 짧은 수명을 가진 刊行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配布에 있어서도 亦是 統合된 配布機構가 없고 거의가 統一된 配布原則도 없이 配布되고 있다. 또한 政府刊行物の 철저한 保管을 임무로 하는 國家의 保存圖書館制度가 없다. 다만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이 자기 納本規程에 의하여 收集하고 있으나 完全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資料들의 利用面에 있어서도 目錄의 不備와 普及機構의 不足으로 全國民이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이상과 같은 諸現狀에서 오는 問題點을 打開하기 위한 措置로 다음 몇가지를 提議하는 바이다.

첫째, 政府刊行物 發刊機構의 設置이다. 現存하는 政府刊行物調整審議委員會의 機構를 大幅強化하여 그의 機能¹²⁾ 이외에도 政府刊行物の 發刊의 調整까지도 건담하여야 할 것이며 同委員會에 附設印刷機關을 設置하여 이른바 美國의 「政府印刷所」(Government Printing Office)와 같은 機構의 役割을 한다든지, 아니면 次善策으로 日本의 「大藏省印刷局」같은 機構를 설치하여 많은 政府의 印刷物을 單一기구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同時에 이곳에서 完璧한 政府刊行物目錄을 作成하여 보다 迅速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政府刊行物を 이곳에서 集中的이고 一元화된 配布를 하게 함으로써 行政의 能率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12) 同會規程 제4조, ①간행물 내용의 중복여부와 유사간행물의 폐간 또는 통합 ②간행물의 판매적부 및 방법 ③ 기타 간행물발간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둘째, 客觀性있는 配布基準의 設定이나 從來의 政府刊行物配布는 活用을 위한 目的이나 必要性을 고려치 않고 團體나 個人에게 無計劃한 配布를 한 點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發行機關은 이것을 止揚하고 最大限의 活用과 必要性을 參照하여 客觀性있고 一貫性있는 原則을 세워야 하며 이미 納本法에 依해 규정되어 있는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에는 철저하게 納本되어 적어도 「정부간행물목록」에는 빠짐없이 記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前項 <表 3>에서 이미 例示된 바와 같이 發行機關의 發行原則과 發行頻도가 不規則한 點이 적지 않다. 特히 定期刊行物の 경우 刊行物名이 즉흥적으로 변경되는 例가 非一非再하며 刊行種別이 자주 달라져 利用者가 甚한 不便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發行機關에서는 特定物の 發行에 앞서 充分한 事前調査와 앞으로의 持續性等的 研究檢討가 있는 後에 施行하여야 할 것이고 同刊行物の 發刊으로 미치는 政府와 國民의 영향까지 考慮함이 바람직하다.

第16回

全國圖書館大會發表論文 募集

今般 本協會는 오는 10月中 釜山에서 開催 豫定인 第16回 全國圖書館大會 發表論文을 다음 要領에 의하여 널리 募集하오니 會員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바랍니다.

1. 主題內容: 最近 우리 國家社會는 圖書館의 機能擴大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要求하고 있어 이에 적극 對處할 수 있는 圖書館發展策이 時急히 마련되어져야 하겠읍니다.

이번 第16回 全國圖書館大會에서는 이러한 時代의 要求에 對應하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圖書館發展方向」에 대한 圖書館界의 意見을 再檢討하고 綜合해 보고자 합니다. 全體圖書館人들의 討論의 廣場인 全國圖書館大會席上에서 기탄없이 發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提出方法: 發表하고자 하는 主要內容을 于先 200字 圓고지 20枚 未滿으로 簡略하게 要約하여 提出하기 바람.

3. 提出期限: 1978年 8月 25日 까지

4. 審査決定: 專門委員會의 審査를 거친후 8月 31日까지 연락할 것임.

5. 發表時間: 50분(圓고지 60매~80매정도)

6. 其他: 其他詳細한 內容은 事務局으로 問談 하시기 바람